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9 선고 2020나5043(본소), 2020나5050(반소) 판결 [공사대금
청구의 소 용역비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9 선고 2020나5043(본소), 2020나5050(반소)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2. 12 선고 2018가단26138(본소)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 항소인

주식회사 A (합병 전 회사 : B 주식회사)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규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오치원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주식회사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서라경

변론 종결 2020. 9. 17

판결 선고 2020. 10. 29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가단26138(본소), 2018

가단5243853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본소 : 피고(반소원고,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38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3. 5.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 : 원고는 피고에게 23,1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
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
원고는 피고에게 23,1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송달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 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)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현석판사 당우증판사 최정인